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583

발의연월일: 2022. 1. 26.

발 의 자 : 조명희 · 황보승희 · 양향자

태영호 · 김석기 · 성일종

이주환 · 안병길 · 홍문표

조경태 • 박대수 • 박성민

김도읍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화재 등의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절차 등 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방화막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무대 주위에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강제 배연구(排煙口)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화막, 강제 배연구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강제 배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제43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1조의7을 위반하여 방화막, 강제 배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방화막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운영자는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 강제 배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방화막, 강제 배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7(방화막 등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u>자는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u>
	막(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무대 주위에 설치
	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강제 배연구(排煙口)를 설치하
	<u> 여야 한다.</u>
	② 방화막, 강제 배연구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u> 령령으로 정한다.</u>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	제33조(행정처분) ①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	
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u>
	막, 강제 배연구를 설치하지

- 6. 7. (생략)
- ②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2. (생략)

<신 설>

- 2. ~ 4. (생략)
- ③ ~ ⑤ (생 략)

<u>아니한</u>자

- 6.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_____
- -----.
-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1조의7을 위반하여 방화막, 강제 배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